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131
----------	------

제출년월일 : 2010. 2. .
제 출 자 : 충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4. 1. 공포, 2009. 7. 2. 시행)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
- 나.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를 조달청 계약단가로 함
- 다. 「충주시 새주소위원회」를 「충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안 제8조)
- 나.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19조)
 - 도로명주소안내판 :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
 - 도로명주소안내도 :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
- 다. 충주시 새주소위원회를 충주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함 (안 제24조)

3.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4. 기타참고자료 : 관계법령 별첨

- 덧붙임 : 1. 충주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3. 관계법령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주소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의 제목을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를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으로 한다

제6조와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은 충주시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적용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충주시 수입증지로 한다.

제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 2(원인자부담)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충주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의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한다.

제4장(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1조 중(제목 포함) "도로명사업"을 각각 "법"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하고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로명사업담당부서"를 각각 "도로명주소담당부서"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목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명 관련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 포함) 중 "도로명시설"을 각각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로명시설"을 각각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18조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광고의 범위) ① 시장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안내표지판"을 각각 "도로명주소안내판"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새주소 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중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충주시새주소위원회"를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충주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로명사업"을 각각 "도로명주소사업"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중 "도로명사업담당부서"를 "도로명주소담당부서"로 한다.

제30조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u>」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도로명주소법</u>」 ---- ----- ----- -----</p>
<p>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u>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u>관련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u></p>	<p>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u>도로명주소법</u>」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u>도로명주소대장규칙</u>」 및 「<u>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u>」에 <u>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① 영 제9조 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로, 노(路)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2.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숫자를 	<p>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 <u>< 삭제 ></u></p>

현행	개정안
<p>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예외로 한다)으로 함</p> <p>3.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폐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1호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함</p> <p>②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p> <p>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서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자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설치완료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삭제 ></p>
<p>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p>	<p>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p>

현행	개정안
<p>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 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p>	<p>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 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p> <p>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은 충주시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적용한다.</p> <p>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충주시 수입증지로 한다.</p>
<p>< 신설 ></p> <p>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p>	<p>제8조의 2(원인자부담)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충주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의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한다.</p> <p>< 삭제 > < 삭제 ></p>

는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 준공예정일(건축물의 경우 임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 90일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인가서
- 2. 사업계획도(축척 3,000분의 1 이상)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설치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 1.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 2. 사업지역에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 위치 및 수량
- 3.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기간
- 4. 도로명시설을 시장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의 비용 납부방법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자체 제작·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직접 설치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p>제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① 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 신청(건축물의 경우는 임시사용·동별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한다.</p>	<p>< 삭제 ></p>
<p>제11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p>	<p>제11조(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p> <p>-----</p> <p>----- 법 -----</p> <p>----- 법 -----</p> <p>-----</p> <p>-----</p> <p>-----</p> <p>-----</p>
<p>제12조(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시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p>	<p>제12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p> <p>① -----</p> <p>-----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p> <p>② 도로명주소담당부서 -----</p> <p>-----</p>

현행	개정안
<p>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 -----</p>
<p><u>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도로명기본도에 배경자료 (철도, 호수, 하천, 공원, 교량 등을 말한다)와 보조자료(건축물군, 교차로, 철도역, 관광지 등을 말한다)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u></p>	<p><u>< 삭제 ></u></p>
<p><u>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시장은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변경사유 및 부여·변경일자 등을 충주시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u></p>	<p><u>< 삭제 ></u></p>
<p>제6장 <u>도로명시설</u>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u>도로명시설</u>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u>도로명시설</u>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p>	<p>제6장 <u>도로명주소시설</u>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 ---- <u>도로명주소시설</u> ---- ----- ----- ----- ----- ② ----- -- <u>도로명주소시설</u> -- -----</p>
<p>제16조(<u>도로명시설</u>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p>	<p>제16조(<u>도로명주소시설</u>의 유지관리위탁) ① -----</p>

현행	개정안
<p>따라 <u>도로명사업</u>에 의하여 설치된 <u>도로명시설</u>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u>도로명 관련시설</u>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u>도로명시설</u>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도로명시설</u>의 종류, 수량, 위치 (생략) <u>도로명시설</u>의 관리 및 정비계획 <u>도로명시설</u> 일제조사 계획 <u>도로명시설</u>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u>도로명시설</u>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생략) <p>제17조(<u>도로명시설</u>의 점검) ① 시장은 <u>도로명시설</u>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u>도로명시설</u>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p> <p>② 수탁자는 <u>도로명시설</u>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 <u>법</u>-----<u>도</u> <u>로명주소시설</u>----- ----- ----- 1. (현행과 같음) 2. ----- - <u>도로명주소시설</u>----- ----- ② -----<u>도로명주소시설</u> ----- ----- 1. <u>도로명주소시설</u>----- 2. (현행과 같음) 3. <u>도로명주소시설</u>----- 4. <u>도로명주소시설</u>----- 5. <u>도로명주소시설</u>----- ----- 6. <u>도로명주소시설</u>----- ----- 7. (현행과 같음)</p> <p>제17조(<u>도로명주소시설</u>의 점검) ① - <u>도로명주소시설</u>의----- ----- ----- -----<u>도로명</u> <u>주소시설</u>----- ② --- <u>도로명주소시설</u>----- ----- ----- -----</p>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수탁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가 <u>도로명시설</u>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p> <p>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 <u>시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계획</u> 2. <u>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제작수량</u> 3. <u>안내표지판의 종류, 제작수량, 설치위치, 규격</u> 4. <u>광고사업 참가자격</u> 5. <u>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제출서류(제2항의 서류를 말한다)</u> 6.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② <u>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사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의 제작·구성계획</u> 2. <u>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u> 	<p>제18조(수탁자의 지도·감독) ----- -----<u>도로명주소시설</u>----- -----</p> <p>제7장 <u>도로명주소안내판</u> 등을 이용한 광고</p> <p>제19조(광고의 범위) ① <u>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u></p> <p>② <u>시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3. <u>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u></p> <p>4. <u>그 밖에 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③ <u>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충주시 새주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자를 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u> 2. <u>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u> 3. <u>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u> 4. <u>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u> <p>④ <u>제3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배점부여기준은 충주시새주소위원회에서 정한다.</u></p> <p>⑤ <u>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충주시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고,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u></p>	
<p>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략)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u>안내표지</u> 	<p>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도로명

현행	개정안
<p><u>판</u>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u>안내표지판</u>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p> <p>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추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1. 각종 버스정류장,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u>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u></p> <p>2. ~ 4. (생략)</p> <p>제9장 충주시<u>새주소위원회</u> 등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u>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충주시새주소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p> <p>1. <u>도로명사업</u>과 관련된 관계공무원</p> <p>2. <u>도로명사업</u>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p>	<p><u>주소안내판</u>-----</p> <p>-----</p> <p>③ -----</p> <p>-----<u>도로명주소안내판</u>-----</p> <p>-----</p> <p>-----</p> <p>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p> <p>-----</p> <p>-----</p> <p>-----</p> <p>1. -----</p> <p>-----<u>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u></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9장 충주시<u>도로명주소위원회</u> 등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u>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충주시도로명주소위원회</u>-----</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1. <u>도로명주소사업</u>-----</p> <p>2. <u>도로명주소사업</u>-----</p>

현행	개정안
<p>협이 풍부한 자</p> <p>3. ~ 4. (생략)</p> <p>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u>도로명의 부여·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u></p> <p>3. <u>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u></p> <p>4. <u>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u></p> <p>5. <u>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u></p> <p>6. <u>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u></p> <p>제2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u>도로명사업담당부서</u>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p> <p>② (생략)</p> <p>1. ~ 4. (생략)</p> <p>제3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3. <u>토의 및 진행사항</u></p> <p>4. <u>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u></p> <p>5. <u>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p> <p>3. ~ 4. (현행과 같음)</p> <p>< 삭제 ></p> <p>제29조(간사) ① ----- -----<u>도로명주소담당부서</u> -----</p> <p>②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30조(회의록의 작성)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토의 및 심의결과</u></p> <p>4. <u>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 삭제 ></p>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물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과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나 정착된 활동에 이용되는 인공 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을 말한다.
3. “도로명주소사업”이란 도로와 건물등에 도로명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시설 등을 설치·유지관리·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도로명주소안내도”란 도로명주소기본도를 이용하여 도로명주소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11. “도로명주소시설”이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판(지주등 그 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물번호판, 도로명주소안내판(지역안내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산자료, 전산시설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
12.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이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및 지역 안내판을 말한다.

제8조의3 (도로명주소대장)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나타내기 위한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도로명 또는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
2.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설정·변경·폐지
3. 도로명주소에 사용되는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4.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정비·철거
5. 관련 지번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참고사항의 변경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기재내용·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처리대장에 의하여 작성·관리되어야 한다.

제8조의4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원인자 부담)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도로명주소안내판의 광고)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판에 장애가 없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사업자의 선정과 광고방법 및 광고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비 수입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도로명주소위원회) ① 도로명의 부여·변경·그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를, 시·도에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시·군·자치구에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둔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0조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 ① 시장등이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작성하는 도로명주소기본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철도, 호수, 하천, 공원, 다리등의 배경자료

제12조의2 (원인자 부담)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인가·허가·승인을 그 인가·허가·승인권자에게 신청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이하 이 조에서 “설치비”라 한다)를 부담하려는 경우에만 설치계획서에 포함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지역, 내용 및 계획도

3.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계획(도로명주소안내 시설의 설치수량 및 설치 위치를 포함하며, 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예상 설치비와 설치완료 예정일까지 포함한다)

4. 도로망 계획도

5. 비용부담계획(비용 납부 예정일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시장등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도로구간의 설정과 도로명·기초번호·건물번호의 부여 등을 말한다)

② 개발사업의 인가·허가·승인권자는 그 인가·허가·승인을 할때 개발사업시행자가 시장등에게 설치계획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인가·허가·승인을 신청할 때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독려할 수 있다.

④ 도로·건물등의 사용승인권자·준공권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계획서(제5항제1호의 수정계획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정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했거나 설치비를 시장등에게 냈는지 확인한 후 그 개발사업에 따라 설치된 도로·건물등에 대한 사용승인·준공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시장등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수정한 경우 그 수정계획서(시장등이 계산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예상 설치비를 포함한다. 이하 “수정계획서”라 한다)

2. 도로구간의 설정과 도로명·기초번호·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관한 계획

⑥ 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예상 설치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1. 조달 단가

2. 설치계획서를 받기 바로 전에 시장등이 설치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

⑦ 개발사업시행자는 수정계획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수정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⑧ 시장등은 제7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설치계획서

2. 수정계획서

3. 개발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의 내용

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제8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통보받은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⑩ 시장등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비를 내기로 한 경우(제1항제5호의 비용부담계획이 포함된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설치계획서에 있는 비용 납부 예정일 10일전에 그 비용 납부 예정일을 납부기한

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내야 한다.

⑪ 시장등은 설치비를 내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비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⑫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제1항제3호 중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예상 설치비와 설치 완료 예정일이 포함된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⑬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그 시설의 설치를 끝내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 예정 완료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는 수정계획서에 적힌 예상설치비(제7항 전단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한 경우에는 제 8항의 심의결과에 따른 예상설치비를 말한다)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들인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⑭ 제13항 전단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납부기한까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를 끝내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설치비를 시장등에게 내야 한다.

⑮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장등이 제10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를 보낸 경우

2.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3항 전단에 따라 납부서를 받고도 그 납부 기한까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를 끝내지 않은 경우

제18조 (광고) ④ 광고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 및 광고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등) ⑤ 제1항 후단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